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2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5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부일건화(김재환)

②(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한규철)

나. 전화번호 : ①02-3473-4066 ②02-526-80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54호

3. 명칭 : PET 일체형 고점착 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Punched 테이프로 접합하고 고경질 도막재를 복합한 방수·방근 기술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바탕면 거동 대응형 자착식 방수층과 양면 부직포 PET 필름이 적층된 일체형 방수·방근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그 상부 전면에 고경질 도막을 복합한 인공지반 녹화용 3중층 방수 및 방근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양면 부직포 PET 필름이 적층된 일체형 방수·방근시트가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 표층부의 강접 접착제 및 폴리에스터 부직포에 의해 화학적·물리적으로 접합되고 PET 접합 테이프 가장자리의 천공부를 관통해 고경질 도막이 합체 및 경화되어 기계적 걸림에 의해 접합부 결합력이 향상됨으로써 일체형 방수·방근 연속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범위>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양면 라미네이트된 PET 일체형 고점착 방수·방근시트를 고경질 우레탄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상부에 고경질 우레탄 도막을 복합한 3중층 방수·방근 기술

5. 보호기간 : 2015.1.13. ~ 2023.1.12.(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